

원격수업 운영규정

제정 2019.06.10
 개정 2020.12.14
 개정 2021.09.27
 개정 2022.05.02
 개정 2024.11.04
 개정 2025.03.10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이 규정에서 "원격수업"이라 함은 교수-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를 의미하며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수업의 70%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. 수업의 공간적 특성 및 시간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시적 원격수업(실시간 원격수업) 및 비동시적 원격수업 모두를 의미한다.

②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이 혼합된 수업의 경우에도 원격수업의 비중이 전체수업(평가 활동 제외) 시수의 70% 이상이면 원격수업으로 인정한다.

제3조의1(위원회) ①원격수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를 위해 「원격수업 관리위원회」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원격수업담당 부서장으로 하고, 위원장을 포함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 구성은 교직원, 학생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
제3조의2(위원회 회의 및 심의사항)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- 가. 원격수업 제반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
- 나. 원격수업 강좌의 개설에 관한 사항
- 다. 원격수업 콘텐츠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- 라. 원격수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운영교과) ①원격수업의 운영교과목은 스쿨별 교육과정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②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전공별 교육과정 편성과목 수의 30% 이내로 개설한다. 단, 교양교육원의 교양교육과정,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모집정지전공의 교육과정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수강대상) 원격수업 운영교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우리대학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타 대학 및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.

제6조(수강신청) ①수강신청 방법 및 시기는 매 학기(계절수업 포함) 일반교과 수강신청과 같다.

②삭제

제7조(수업시수) 원격수업의 학점 당 이수 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 원격수업의 강의콘텐츠는 1차시당 VOD 콘텐츠의 경우 진행 시간이 25분 이상(1학점 기준) 되도록 제작하고 VOD 콘텐츠 진행 시간을 포함한 1차시 총 학습 시간은 50분 이상이 되도록 한다.

제8조(수업) ①우리대학의 원격수업은 실시간 원격수업(동시적 원격수업)과 일부 사전제작 콘텐츠(VOD)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의 형태로 운영한다. 단, 대학 e-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, 온라인공개수업 콘텐츠(MOOC) 등의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나 위원회가 승인한 사전제작 콘텐츠(VOD)의 경우는 비동시적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.

②원격수업에 대해 수강신청자가 10인 미만일 때는 이를 폐강할 수 있다.

③원격수업은 매 학기 강의시간표상의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비동시적 원격수업 형태로 운영하는 수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④원격수업은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⑤원격수업은 주차별 강의계획서에 따라 진행한다.

제9조(출결관리) ①원격수업의 출결관리는 전자출결시스템의 출결체크와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접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0조(성적평가) ①지필고사는 출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학 e-러닝기반 학점인정 컨소시엄 등을 통해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로 지정된 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을 통해 외국대학에서 제공하는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경우는 온라인평가를 할 수 있다. 또한, 출석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온라인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실기평가나 발표 등의 평가는 온라인평가를 할 수 있다.

③온라인평가를 할 때는 평가근거자료를 LMS 및 파일로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수인정 및 강사료) 원격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의 시수인정 및 강사료 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원격수업 강의평가 및 원격교육콘텐츠 품질관리) ①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개선 및 환류를 위해 학기당 2회 이상 학생 대상 만족도 평가를 시행하고,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한다.

②비동시적 원격수업을 위해 개발한 원격교육콘텐츠는 교육활용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위원회에서 품질관리 심의를 하며, 적절한 사후 조치를 통해 유지관리 한다.

③삭제

④원격수업 중 학기말에 실시한 학생대상 만족도 평가결과, 일정 수준 이하인 원격수업 담당 교원에게 위원회는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 참여를 권고할 수 있다.

⑤제④항의 교육 참여를 권고받은 교원이 지정된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이후 원격수업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3조(저작권) ①대학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대학에 귀속된다.

②교수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교수자에게 있으며 대학은 콘텐츠에 대한 활용권을 갖는다.

③콘텐츠 개발자는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며,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경우, 그 개발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④대학의 지원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무처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.

⑤강의영상을 정보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, 사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⑥원격 수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자료에 대해 다음 각호의 행위는 엄격히 차단되어야 한다.

가. 원격수업 콘텐츠 및 수업영상과 자료를 캡쳐, 복제, 배포하거나 수정하는 행위

나. 수업상황을 녹화, 녹음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

다. 원격수업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수자의 허락없이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

⑦제⑥항의 위반자에 대하여는 초상권 침해와 저작권법,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한다.

제14조(기타) ①비정규교과목으로 개설한 원격수업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천재지변 및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해 정상 대면수업이 불가능하여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경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삭제

제15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(단. 제6조 2항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)
4.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 (단. 제4조 2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)
6. 이 규정은 2025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